

- 8.
- 9.
- 10.
- 11.
- 12.

가 , 1 .

5 () 가 4 , 6 .

6 () 가 2 5 가

7 () 가 가

8 () 가 가
가 . .

9 (가) (" ") (" ")
)가 13 1 가

. < [2008.2.29, 2010.3.15](#) >

- 1.
- 2.
- 3.
- 4.
- 5.
- 6.

10 ()

- 1.
- 2.
- 3.
- 4.
- 5.
- 6.
- 7.
- 8.

11 (가) 13 3 가 가

- 1.
- 2.
3. • ,

12 () 3 14 •
• •

13 () 18 (" ")
.< [2008.2.29, 2010.3.15](#)>

1. 51
2. 52 (" ")
3. • • 가
- 4.
- 5.
6. •

14 () 18 2 1 2 100
•
, 1 , 1
.< [2008.2.29, 2010.3.15](#)>

.< [2008.2.29, 2010.3.15](#)>

15 () , •
,
•

16 () , 가
•
.< [2008.2.29, 2010.3.15](#)>

17 () •
1 .<
[2008.2.29, 2010.3.15](#)>

18 ()

, 3 2

가 가
가

19 ()

. <

[2008.2.29, 2010.3.15](#)>

20 ()

10

10

1 4

. < [2008.2.29, 2010.3.15](#) >

21 ()

1

. < [2008.2.29, 2010.3.15](#) >

22 ()

, . < [2008.2.29, 2010.3.15](#) >

23 (

)

23

4

14

"

"

. < [2008.6.25, 2008.10.14](#) >

1. 「 」 15

가

4

2. 「 」 31

「

」 61

가

3. 「 」 33

가

5 1

4. 「 」 7

가

「 가

」 「

」 「5·18

」

가가

5. 「 」 3

(「 」

)가

6. 「 」 16

(「 」

)가

24 () 24 2 5 " 1 4

가

1.

2. 가 25

3. , 「 」

4. 가 가

5. 가 .

. 가

, , . . . (" . ") , . . () 24 2

69

.< 2008.2.29,

2010.3.15>

1. (가) 가 .

. . .

2.

25 () 45 3

. 가 .

26 ()

5

.< 2008.10.14>

27 () ,

.

1. 가. , , 가 45
· · ·

· 20

· 15

2. 50 20

28 () · · ·
가 가 , 30 .

29 () ·

· < [2008.10.14](#) >

1.

2. 26

3. 5 1 가 5 1

4. 5 3 가

5.

1 .<

[2008.2.29, 2010.3.15](#) >

30 () · 28 가

가 6 · ,

가 가 가 2

· , ·
· 1 ·

31 () ·

1 2 5 ·

32 () · 28 가 19

32 2() 47 2 1 「 」
55 가 (" ")

. < 2010.3.15 >

[2008.10.14]

[32 2 32 5 <2008.10.14 >]

32 3()

< 2010.3.15 >

1. · 가 ·

2.

3.

4. (가 ,
가 , 13)

(RFID tag)

5. ·

6. 47 2 2 ·

7.

1 ·

. < 2010.3.15 >

1. :

2. : 2

1 4

가

. < 2010.3.15 >

[2008.10.14]

32 4() 가 ,

, 가 (「
」 2 2)

, . < 2010.3.15 >

1. 가 가

2. 가

3. 가

4.

1 가 ,

1 가 ()

1 , 2 . < 2010.3.15 >

[2008.10.14]

32 5() 68 2 2
67 .

[2008.4.10]

[32 2 <2008.10.14 >]

33 () 81 2
2 . < 2008.2.29,
2010.3.15 >

34 (.) 81 , . , . .
. < 2008.2.29, 2010.3.15 >

34 2() 81 4 , . , .
가 15
10 .

1 가

1. 81 1 2 1

2. 81 1 2 1

2 1

,

[2008.10.14]

< 22075 ,2010. 3.15 >

1 () 2010 3 19 . < >

2 () <104>

<105>

2 1 2 , 3 2 3 , 9 , 13 6 ,
 14 3 , 16 2 , 17 2 , 19 , 20 5 , 21 2 , 22 , 24 2
 , 32 2, 32 3 1 4 7 · 2 3 , 32 4 1 4
 4 , 35 1 2 , 39 2 3 8 가 "
 가 " " "
 14 2 " 가 " " "
 21 2 " 가 " " "
 29 2 , 33 , 34 2 36 " 가 " " "

<106> <187>

[별표 1]

한약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제4조제2항 관련)

시 험 과 목	출 제 범 위
1. 한약의 생산 및 제조	천연물화학 및 약제학
2. 한약조제	본초학, 한약방제학, 한방약리학, 생약학실습 및 포제학
3. 한약감정	약품분석학, 대한약전 및 한약(생약)규격집
4.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저장학 및 한약유통학
5. 한약학의 기초	약사·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독성학, 약용식물학

[별표 2] <개정 2008.10.14>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

(단위 : 만원)

구 분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의 약 품 등 제 조 업 자 · 수 입 자 의 경 우	의 약 품 등 도 매 업 자 의 경 우	약 국 개 설 자 또 는 의 약 품 등 소 매 업 자 의 경 우
		당해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전년도 총매출 금 액	전년도 총매출 금 액
1	3	2,000 미만	50,000 미만	3,000 미만
2	6	2,000 이상 ~5,000 미만	50,000 이상 ~70,000 미만	3,000 이상 ~4,500 미만
3	9	5,000 이상 ~7,000 미만	70,000 이상 ~100,000 미만	4,500 이상 ~6,000 미만
4	12	7,000 이상 ~10,000 미만	100,000 이상 ~150,000 미만	6,000 이상 ~7,500 미만
5	15	10,000 이상 ~15,000 미만	150,000 이상 ~200,000 미만	7,500 이상 ~9,000 미만
6	18	15,000 이상 ~20,000 미만	200,000 이상 ~250,000 미만	9,000 이상 ~10,500 미만
7	21	20,000 이상 ~30,000 미만	250,000 이상 ~300,000 미만	10,500 이상 ~12,000 미만
8	24	30,000 이상 ~50,000 미만	300,000 이상 ~350,000 미만	12,000 이상 ~13,500 미만
9	27	50,000 이상 ~70,000 미만	350,000 이상 ~400,000 미만	13,500 이상 ~15,000 미만
10	30	70,000 이상 ~100,000 미만	400,000 이상 ~450,000 미만	15,000 이상 ~16,500 미만
11	33	100,000 이상 ~200,000 미만	450,000 이상 ~500,000 미만	16,500 이상 ~18,000 미만
12	36	200,000 이상 ~300,000 미만	500,000 이상 ~600,000 미만	18,000 이상 ~19,500 미만
13	39	300,000 이상 ~500,000 미만	600,000 이상 ~700,000 미만	19,500 이상 ~21,000 미만
14	42	500,000 이상 ~700,000 미만	700,000 이상 ~800,000 미만	21,000 이상 ~22,500 미만
15	45	700,000 이상 ~1,000,000 미만	800,000 이상 ~900,000 미만	22,500 이상 ~24,000 미만
16	48	1,000,000 이상 ~2,000,000 미만	900,000 이상 ~1,000,000 미만	24,000 이상 ~25,500 미만

17	51	2,000,000 이상 ~3,000,000 미만	1,000,000 이상 ~1,500,000 미만	25,500 이상 ~27,000 미만
18	54	3,000,000 이상 ~4,000,000 미만	1,500,000 이상 ~2,000,000 미만	27,000 이상 ~28,500 미만
19	57	4,000,000 이상	2,000,000 이상	28,500 이상

비 고

1. 업무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전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나. 품목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당해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시 그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와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를 제외한 다른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당해 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별표 3] <개정 2010.3.1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39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1호	30만원
2.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	50만원
3.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3호	30만원
4. 법 제22조 또는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휴업·재개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4호	50만원 30만원
5. 법 제38조제2항(법 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6호	100만원
7.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7호	50만원
7의2.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7호 의2	100만원
8.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명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도지사가 명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8호	100만원 50만원 30만원
9. 법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9호	30만원
10. 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10호	30만원